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식 량 정 책 과)

1. 개정이유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32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밀과 콩이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됨에 따라 밀과 콩을 명시한 기존 조항을 정비(제2조제3항 삭제)
- 나.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미곡 외 양곡을 명시(제2조의3 신설)
- 다. 수립된 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방법을 규정(제2조의4 신설)
- 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위원 구성, 임기, 위촉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5 신설)
- 마.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소집·개회·의결 조건,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6 신설)
- 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의 발동 기준이 되는 미곡 수급불안의 범위 설정(제16조의2 신설)
- 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수 양곡의 범위를 규정(제23조의2 신설)
-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위임기관 규정(제32조 제2항제5호 신설)

자.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전문기관 규정(제34조제6항 신설)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별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7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조의3)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하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은 밀과 콩을 말한다.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② 양곡위원회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은 제1호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양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등) ① 양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양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양곡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양곡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양곡위원회 위원(제2조의5제2항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차하위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⑦ 양곡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양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양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양곡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을 각각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양곡종합처리장시설등”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미곡의 당해 연도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가격이 직전 5개년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8 이하로 하락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중 “법 제16조의2”를 “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우수 양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양곡

제3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1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2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다.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정보 제공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3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4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5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바.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6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	법 제36조제1항 제7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아.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8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자.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9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별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바목”을 “제2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바목”을 “제2호자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곡류 등) ①·②(생략)	제2조(곡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삭제>
<신설>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② 양곡위원회 위촉직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제1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
 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
 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양곡위원회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
 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등)
 ① 양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
 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양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긴급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양곡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양곡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양곡위원회 위원(제2조의5제2항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차하위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양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⑦ 양곡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양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양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양곡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생 략)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

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2조의7(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
법 제6조제3항-----

-----.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 양곡종합처리장-----

3. (현행과 같음)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
----- 법 제7조제2항-----

-----.

②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생략)
 - ② (생략)
- <신설>

----- 법 제7조 제3항-----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

-----.

1. (현행과 같음)
2. 양곡종합처리장시설등-----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에서”란 미곡의 당해 연도 7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가격이 직전 5개년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8 이하로 하락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
----법 제16조의3-----

-----.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우수 양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

	<u>증을 받은 양곡</u> 2.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양곡			<u>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위탁한다.</u>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1. 법 제7조-----	
<u><신설></u>	5.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	
<u><신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u>	<u>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u>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2배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줄이는 경우 과태료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하고, 늘리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

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다.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자	법 제36조	60	80	

			료제출·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 료 제출·정보 제공한 경우	제1항제3호	만원	만원	100 만원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 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라.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60 만원	80 만원	100 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 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60 만원	80 만원	100 만원
다.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 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50만원	바.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 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6호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라.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 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100만원	사.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7호	60 만원	80 만원	100 만원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50만원	아.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8호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 우	법 제36조 제1항제6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자.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9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제2호바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제2호자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4. 제2호바목의 과태료 부과방법
가. (생 략)
나. (생 략)

4. 제2호자목의 과태료 부과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
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